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2018.12.11.)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6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9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안번호 제2018 - 106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일자리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을 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함.

- 가.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 2조, 제 3조, 제 4조)
- 나.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 5조)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 다.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제 6조)
- 라.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 7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제 8조)

-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및「청년고용촉진 특볍법」에 따라 일자리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을 청년 등 전 군민에게 확대 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8 - 107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 시켜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2023년 12월 31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O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2023년 12월 31일
- 나. 상위법령 재기재·중복사항을 삭제·정비함.(안 제3조·제5조·제6조)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 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8 - 109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 중인 부르미택시 비용지원 대상자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변경 하여 부르미택시 운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르미택시사업 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른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 나. 부르미택시 비용신청자를 변경함(안 제4조)
 -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 ⇒ 부르미택시 사업자

4. 전문위원 검토요지

O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르미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신청자를 대상마을대표자에서 택시 사업자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다 다 다 다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
-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함.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2023년 12월 31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2023년 12월 31일
- 나. 상위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정비함.(현행 제2조·제5조·제7조)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8 - 112호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기존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규정사항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축소하여 주민의 이용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 삭제함.(안 제20조)

○ 조례 : 현수막 게시기간 10일 ⇒ 삭제

O 법령: 현수막 게시기간 15일 이내

- 나. 법령 위임범위 보다 낮게 규정된 과태료금액 조정함.(안 별표 6)
 - O 도로 입간판의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현수막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조례) 33만원 이상 ⇒ (변경) 35만원 이상

- 본 조례안은 기존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불일치 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가.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함(안 제3조~안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지원
- 다. 전문가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마.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등을 활용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도시재생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
- O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가.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 나.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안 제4조)
- 다.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명시.(안 제6조)
- 라.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마.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9조)

바. 위원회 운영 등(안 제 12조)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자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